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46
----------	------

발의연월일 : 2025. 4. 18.

발의자 : 이재관 · 박지원 · 이강일

안규백 · 김남근 · 위성곤

허성무 · 송재봉 · 김성환

문진석 · 이정문 · 김동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자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전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엔젤투자자는 '21년 1만 4,181명에서 '22년 1만 1,888명, '23년 1만 1,48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문 개인투자자도 '23년 268명에서 '24년 241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 비중도 '21년 16.2%에서 '22년 13.1%, '23년 11.2%, '24년 10.6% (9월 기준)로 감소함. 지방 기업은 상황이 더 나쁨. 따라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장려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방안이 필요함.

이에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비수도

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으로, “제1항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 · 라목 또는 바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 · 라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항 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1호다목 · 라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1. 공제대상 출자 또는 투자

가.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

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

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

는 경우

마. 창업 · 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

하는 경우

2. 공제금액

가. 제1호가목 · 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

나. 제1호다목 · 라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다음

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7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7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1억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

2) 1)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1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30

제88조의4제1항 ·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를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를 “같은 항 제1호다목 · 라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

-----.

1. 공제대상 출자 또는 투자

가.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

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마.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 공제금액

가. 제1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

나. 제1호다목·라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p><u>투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u></p> <p><u>1)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 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 재하는 기업에 출자 또 는 투자한 경우: 출자 또 는 투자한 금액 중 7천 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7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5천만원 이하분까지 는 100분의 70, 1억5천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30</u></p> <p><u>2) 1) 외의 경우: 출자 또 는 투자한 금액 중 5천 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까지는 100 분의 70, 1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30</u></p>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 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 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② ----- ----- ----- ----- ----- ----- ----- ----- -----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for each row.

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u>같은 항 제3호, 제4호</u> 또는 <u>제6호</u> 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3. ----- --- <u>같은 항 제1호다목 · 라목</u> <u>또는 바목</u>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